

202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변경계획(3차) 공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1회, 제2회) 계획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이 '3. 응시자격(바. 응시 자격요건)', 10. 가산특전(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당초 공고문[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6호(2021.2.19.), 제2021-27호(2021.3.15.), 제2021-31호(2021.3.22.)]과 같음.

3. 응 시 자 격

바.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2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촌지도직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 (단과대학장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4-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비 농업계통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관련계통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 이상 하여야 함

10. 가산특전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기술직군(연구직, 지도직 포함) / “붙임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6·7급, 연구사, <u>지도사</u>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점 미적용 (전산, 사회복지, 사서, 간호, 지적, 운전, 의료기술,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계운전, 수의, 약무, 수의연구직 가산점 미적용)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나만을 가산함

[붙임 4-1]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및 학교장 추천서(농촌지도직)
 [붙임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농촌지도직(농업) 가산 자격증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297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daejeon.go.kr>)의 『시험공고』 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